

## 조문별 개정이유서

### 1.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(안 제7조제3호 및 안 제117조제9호)

#### 가. 개정 이유

- '22년부터 직업성 질병의 조기발견·집단발병 예방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시행에 따른 수사 지원을 위해 직업성 질병 감시·수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을 실시함에 따라,
- 현재 법 제4조 제1항 제9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부의 책무 중 직업성 질병 조기발견·예방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

#### 나. 개정 내용

-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령 제7조에 '직업성 질병 조기발견·예방을 위한 사업'을 추가하고,
- 위탁사업자가 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·처리할 수 있도록 제117조에 '법 제4조 제9호에 따른 직업성 질병 조기발견·예방에 관한 사무' 추가

#### 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직업성 질병 감시·수사체계 운영의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소 포착되었던 직업성 질병의 포착 및 근로감독관의 중대·산업재해 수사를 지원하는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,
- 개인정보 취급·처리를 통해 실제 직업성 질병의 데이터를 축적, 실효적인 예방정책 마련에 기여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## 2.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(안 제59조, 별표18)

### 가. 개정 이유

- 법 개정('21. 8. 17.개정, '22. 8. 18.시행)으로 기술지도 계약 의무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되고,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이 시행('22. 1. 27.)됨에 따라,
  - 기술지도 계약 의무주체와 관련한 조문을 수정하고,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건설현장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의무사항을 보완·정비하고 지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개정 내용

- 기술지도 계약의무 주체를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하고,
  -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건설현장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통보(공사금액 50억 이상, 분기 1회 이상)하도록 하며,
  - 지도기관에 기술지도 계약관련 사항(건설업체명, 공사명 등)을 계약 체결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, 도급인이 지도기관의 권고를 미이행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 부과

### 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계약주체 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본사 차원의 산재예방 조치를 유도하며, 기술지도 참여 주체별(발주자, 도급인, 지도기관) 기술지도 계약 및 지도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술지도의 효과성을 제고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### 3.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(안 제96조의2 및 별표35)

#### 가. 개정 이유

- 법 개정('21. 8. 17.개정, '22. 8. 18.시행)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(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)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과(법 제128조의2 제2항)하고 제재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,
  - 시행령에 위임된 '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가지는 사업주의 범위'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

#### 나. 개정 내용

- 시행령에 위임된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\*와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\*\*을 규정

\* ①상시근로자 20인(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) 이상, ②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고 6개 직종(전화상담원, 돌봄서비스 종사원, 텔레마케터, 배달원, 청소원·환경미화원, 아파트경비원·건물경비원)의 근로자가 2인 이상

- \*\* ▲ 휴게시설 미설치 1~3차 이상 위반: 1,500만원 과태료  
▲ 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미준수 1차: 50만원, 2차: 250만원, 3차 이상 위반: 500만원 과태료

#### 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정하여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#### 4. 야간 특수건강진단 지정기준의 일몰 폐지(안 부칙 제30256호 제3조 삭제)

##### 가. 개정 이유

-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·군 지역 근로자는 일반검진기관을 야간 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('18. 1월)하면서 '23. 1월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일몰 규정을 두었으나,
 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배달·대리기사 등)의 특수건강진단 장려 등으로 인하여 해당 건강진단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,
  -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난이도가 현재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높지 않은 점과,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일몰규정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임

##### 나. 개정 내용

-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·군 지역의 일반건강검진기관도 교육이수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일몰 조항(대통령령 부칙 제30256호 제3조(유효기간))을 폐지

\* 대통령령 제30256호(2019.12.24.)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7조제2항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유효함

##### 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##### 라. 입법효과

-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, 야간작업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 접근성 제고를 통한 건강권 보장

#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## 5.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강화(안 별표3)

### 가. 개정 이유

- 일부 업종은 높은 사고성 재해율, 사고성 사망만인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\*이 낮아, 해당 업종\*\*의 재해감소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

\* (규모별 선임) 50인 이상 규모 1명(공통) → ①500인 이상 2명(고위험), ②1000명이상 2명(저위험)

\*\* (운수 및 창고업) 사고사망만인율 1.00, 사고재해율 0.50

### 나. 개정 내용

-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사고성 재해율과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\*을 추가하고, 작업의 위험성 및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'운수 및 창고업'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고위험 업종 수준으로 조정·강화\*\*

\* ①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 제외, ②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, ③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, ④환경 정화 및 복원업

\*\* 운수 및 창고업 (현행) 상시근로자 50명이상 1천명미만 시 1명이상, 1천명이상 시 2명이상 선임  
→ (개정) 상시근로자 50명이상 500명미만 시 1명이상, 500명이상 시 2명이상 선임

### 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고위험 업종의 안전관리체계 정비로 산업재해 감소 기대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## 6.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(안 별표3 및 별표4)

### 가. 개정 이유

-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, 이를 위해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,
  - 건설업에서 건설 공정에 대한 지식을 안전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개정 내용

- 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토목·건축 분야 자격 및 실무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등을 추가\*하고,
  - \* ①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건축·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으로서,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, ②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·토목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경력이 기사 자격은 3년,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,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
  - 추가한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자가 현장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시행령 [별표 3]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 규정 신설

### 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안전관리 선임기준에 실무·자격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고, 안전관리자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## 7.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강화(안 별표28)

### 가. 개정 이유

- 현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인력 없이도 석면해체업 등록이 가능하여 석면해체업체의 무분별한 등록이 만연하고, 시장 과포화로 업체 수 대비 작업건수가 감소로 인한 과당경쟁(저가수주)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,
  - 석면해체제거업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# 나. 개정 내용

- 석면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'산업안전보건 자격자' 1명 이상을 석면해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, ②'토목건축 분야 자격자' 또는 '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' 중에서 1명 이상을 또한 석면해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인력기준을 정비

※ (유예 사항) 단, 시행 당시 개정안에 따라 업무 전담이 필요한 사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고 석면해체업체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이 재직하는 기간에 한해서는 개정안 인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적용례 부여

### 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산업안전보건 자격자를 전담자로 두도록 하여 석면해체 작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석면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